경부선(국철1호선-노량진~당정)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13, 6, 5,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5월 27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5월 31일

라. 상정일자: 제175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13년 6월 4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건설국장 오상균)

가. 제안이유

○ 경부선(국철1호선-노량진 ~ 당정)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6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용산 구가 참여함에 따라 관련 규약안을 개정하고 구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됨.

나. 주요내용

- 1) 규약 명칭 변경(안 제2조)
 - 현행 : 경부선(국철1호선-노량진~당정) 지하화 추진 협의회
 - 변경 : 경부선(서울역~당정역) 지하화 추진 협의회
- 2) 협의회 규약기관 확대(안 제4조)
 - 현행: 6개 지자체(동작, 영등포, 구로, 금천, 안양, 군포)
 - 변경: 7개 지자체(용산, 동작, 영등포, 구로, 금천, 안양, 군포)
- 3) 사업구간 확대(안 제10조)
 - 현행 : 노량진 ~ 당정역 ⇒ 변경 : 서울역 ~ 당정역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태선)

○ 본 개정규약안은 당초 경부선(국철1호선 노량진 ~ 당정) 지하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6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, 재정적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체결하였으나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7개 단체로 확대되는 등 규약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「지방자치법」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된 규약안임.

○ 주요내용을 보면

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6개 자치단체에서 용산구가 추가된 7개 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규약 명칭이 경부선(서울역~당정역) 지하화 추진 협의회로 변경되고, 사업구간 또한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확대 시행 하는 것으로 개정함.

○ 2012. 5. 3 영등포구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가 경부선(국철1호선-노량진~당정) 지하화 추진을 위하여 공동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2012. 12. 21에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이 승인됨.

이번 개정규약안은 용산구가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협의회 운영 및 사업 추진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「지방자치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경부선 (국철1호선-노랑진~당정) 자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

의 안 번 호 제 212 호 제출연월일: 2013. 5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영등포구 고시 제2012-130호(2012.12.21)로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가 당초 구로구를 비롯한 6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용산구의 참여요청에 따라 용산구를 포함한 7개 지자체로 변경하기 위한 규약 개정임.
- 용산구의 참여에 따른 협의회 규약 명칭, 규약기관, 사업구간 등의 변동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며, 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은 변동이 없음.

2. 주요개정 내용

가. 규약 명칭 변경

(현행) 경부선 (국철1호선-노량진 ~ 당정) 지하화 추진 협의회

(변경) 경부선(서울역~당정역) 지하화 추진 협의회

나. 협의회 규약기관 확대

(현행) 6개 지자체(서울 동작·영등포·구로·금천, 경기 안양·군포)

(변경) 7개 지자체(서울 용산·동작·영등포·구로·금천, 경기 안양·군포)

다. 사업구간 확대

(현행) 노량진 ~ 당정역 ⇒ (변경) 서울역 ~ 당정역

3. 관련법규 : 지방자치법 제152조, 제158조

4. 규약(개정) : 붙임

붙임 : 경부선 (국철1호선-노량진~당정)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부.

경부선 (국철1호선-노랑진~당정) 자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

경부선 (국철1호선-노랑진~당정)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명 "경부선 (국철1호선-노량진~당정)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"을 "경부선(서울역~당정역)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"으로 한다.

제1조 중 "동작구、영등포구、구로구、금천구"를 "용산구、동작구、영등포구、구로구、금천구"로, "경부선(국철1호선-노량진~당정)"을 "경부선(서울역~당정역)"으로 한다.

제2조 중 "경부선(국철1호선 - 노량진~당정)"을 "경부선(서울역~당정역)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6명"을 "7명"으로, "경기도 군포시장"을 "경기도 군포시장, 서울 특별시 용산구청장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호 중 "노량진역"을 "서울역"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서울특별시 <u>동작구、영등</u> | 제1조(목적) <u>용산구、동작</u> |
| 포구、구로구、금천구 및 경기도 안 | 구、영등포구、구로구、금천구 |
| 양시·군포시를 지나는 <u>경부선(국철</u> | 결 |
| <u>1호선-노량진~당정)</u> 을 지하화하여 | <u> 부선(서울역~당정역)</u> |
| 철로 주변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| |
| 제공은 물론 단절된 지역사회를 연결 | |
| 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함에 목적 | |
| 이 있다. | |
| 제2조 (명칭) 이 협의체의 명칭은 "경 | 제2조 "경 |
| <u> 부선(국철1호선 - 노량진~당정)</u> 지 | <u> 부선(서울역~당정역)</u> |
| 하화 추진 협의회"(이하'협의회' | |
| 라 한다)로 한다. | |
| 제4조(구성 및 주관) ① 협의회는 <u>6명</u> | 제4조(구성 및 주관) ① <u>7명</u> - |
|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경기 | |
| 도 안양시장,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| |
| · 구로구청장 · 동작구청장 · 영등포 | |
| 구청장, <u>경기도 군포시장</u> 으로 한다. | 경기도 군포시장, 서울특별시 |
| | <u>용산구청장</u> .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제10조(기능)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 | 제10조(기능) |
| 단체간의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 | |
| 에 관하여 협의한다. | ·· |
| 1. <u>노량진역</u> 에서 당정역까지 경부선 | 1. <u>서울역</u> |
| 철도구간을 국책사업으로 지하화하 | |
|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| |
| 2. ` 3. (생 략) | 2.丶3. (현행과 같음) |